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통합 ○○○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계대상자 울산광역시 ○○○○과 지방○○○○ ○○○
(전 ○○○○○본부 ○○부)

내 용

지방○○○○ ○○○은 2014. 1. 15.부터 2017. 1. 12.까지 울산광역시 ○○○○○본부 ○○부에서 근무하면서 ‘통합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감독 업무를, ‘통합 ○○○센터 구축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공사관리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게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이 있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자(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1. 다. 용역 완성이 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전에 설계도서의 폐기물 처리량 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설령 용역 추진 중에 물량 과오산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추가물량 발생 등의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성상 및 물량 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보고한 후, 처리업체 반입 수량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1. 통합 물 관리센터 구축 사업 관련

가. 혼합건설폐기물 산정 및 정산 부적정 등

울산광역시(○○○○○본부)에서는 가압장, 배수지, 정수장 등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구 ○○로 000번지 소재 ○○ 정수장을 철거하여 「통합 ○○○센터 구축사업¹⁾」을 실시하고자 2013. 4. 9. (주)○○○○○○○○(대표 ○

1)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706.1㎡ / (기간) 2015. 3. 6. ~ 2017. 9. 11. (공사비) 11,448,426천원 (시공자) ○○○○(주) 대표 ○○○○외 2개사

○○)와 “통합 수운영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²⁾하였고,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에 따라 2015. 2. 27. ○○○○○(주)(대표 ○○○)와 “통합 ○○○센터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³⁾하였으며, 2015. 3. 18. (주)○○○○○○○○○○건축(대표 ○○○)외 2개사와 “통합 ○○○센터 구축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⁴⁾하여 건축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혼합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⁵⁾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지침”이라 한다.)」의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실측’에 의한 방법⁶⁾을 원칙으로 하고 실측이 어려운 경우 계근하여 임시 원단위⁷⁾

2) (과업기간) 2013. 4. 16. ~ 2014. 2. 9. / (계약액) 608백만원

3) (폐기물처리 용역기간) 2015. 3. 17. ~ 2017. 9. 13. / (준공금액) 228,899천원

4)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2015. 3. 20. ~ 2017. 9. 20. / (준공금액) 1,444,290천원 / (책임기술자) ○○○(2015. 5. 19. ~ 2017. 9. 20), ○○○(2015. 3. 20. ~ 2015. 5. 18.)

5) 건설폐기물의 종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17. 혼합건설폐기물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6) 지장물의 치수를 재거나 측량하는 등 도면화하여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

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향후 처리업체에서 반입하여 처리한 실적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설표준품셈 1-38 환경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실시설계용역 당시 계약상대자가 기존 건축물(○○정수장)을 철거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물량은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에도 바닥재, 천정재, 벽지 등 각종 내장재 등이 섞여 있어 성상구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물량을 원단위 또는 표준품셈의 산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축물 철거물량을 합하여 일괄 혼합폐기물(2,874ton)로 부적정하게 산정하였음에도 설계 용역성과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23,102천원 상당의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된 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위 관서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추진 중 침전지 내부에서 발생한 폐기물(572ton) 및 기존 배수지 구조물 철거 중 아파트 주민의 소음민원 해소를 사유로 브레커작업 대신 압쇄방식으로 철거한 폐기물(1,224ton)에 대해 시 잔토처리장 반입 곤란 및 적치 공간 부족에 따른 공기지연 등을 사유로 발생 폐기물의 성상을 구분하지 않고 1,796ton을 혼합건설폐기물로 산정하여 19,805천원을 과다하게 증액하여 1차 설계변경(2015. 12. 14.)을 실시하였다.

7) 지장물의 바닥 연면적에 배출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지침」의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결정기준에 따르면 폐금속류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철거공사 시 현장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에 제외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폐금속류의 물량을 산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자재로 구성되어 실측이 용이한 지장물은 그 치수를 재거나 측량하는 등 도면화하여 물량을 산출(‘실측’에 의한 방법)하여야 하고 실측이 어려운 지장물은 그 바닥 연면적에 배출원단위를 곱하여 물량을 산출(‘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한 후 실적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1차 변경이후 건축물 신축 시 자재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잔존 건설폐기물 물량(195t)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처리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폐재류(15ton), 폐콘크리트(121ton), 혼합폐기물(59ton)을 증액하면서 금속 및 철재류 고재 물량(10ton)을 산정(정산)하지 않은 채 2차 설계변경(2017. 3. 13.)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기와 같이 혼합폐기물로 일괄 처리한 물량에 대해 산정기준에 따라 고재 물량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물량(124ton)을 제외하지 않는 등 총 140ton의 금속 및 철재류 고재 물량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및 혼합폐기물 물량을 원단위 또는 표준품셈의 산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성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폐기물로 일괄 처리하는 등 과다 설계 및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하여 집행함에 따라 45,701천원 상당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혼합건설폐기물 설계변경 및 정산계상 내역

| 구분 | 공종 | 설계 및 계약내역 | | | 품셈 등 기준(성상분류) | | | 비고 (정산액) |
|-------------------------|----------|-----------|-------------|-------------|---------------|----------------------|--|--|
| | | 수량(TON) | 단가 | 금액(원) | 수량(TON) | 단가 | 금액(원) | |
| 당초(계약) (2015.2.27.) | 건설폐재류 | - | - | - | 2,525 | 27,074 ⁸⁾ | 68,361,850 | 2,874-(2525+225)=124* 혼·폐공제물량 124ton -발생량의 70%(86ton) 고재 공제를 적용 |
| | 혼합폐기물 | 2,874 | 34,974 | 100,515,276 | 225 | 38,847 ⁹⁾ | 8,740,575 | |
| | 고재 처리 | 87 | -310,390 | -27,003,930 | 86 | -310,390 | -26,693,540 | |
| | 소계 | | | 73,511,346 | | | 50,408,885 | |
| 1차 설계변경 (2015.12.14) | 건설폐재류 | - | - | - | 2,525 | 27,074 | 68,361,850 | - 침전지 혼·폐 572t 증가 - 옹벽 압쇄기 파쇄물량 1,225t ¹⁰⁾ 증가 - 고재처리 6t 증가 |
| | 혼합폐기물 | 4,670 | 34,974 | 163,328,580 | 797 | 38,847 | 30,961,059 | |
| | 폐콘(업체처리) | - | - | - | 1,225 | 16,969 | 20,787,025 | |
| | 고재 처리 | 93 | -310,390 | -28,866,270 | 92 | -310,390 | -28,555,880 | |
| | 소계 | | | 134,462,310 | | | 91,554,054 | |
| 2차 설계변경 (2017.3.13) | 건설폐재류 | 15 | 27,069 | 406,035 | 2,646 | 27,074 | 71,637,804 | - 건설폐재류 15t ¹¹⁾ 증가 - 폐콘 121t ¹²⁾ 증가 - 혼합폐기물 59t 증가 - 고재처리 10t 미반영 |
| | 혼합폐기물 | 4,729 | 34,974 | 165,392,046 | 856 | 38,847 | 33,253,032 | |
| | 폐콘(업체처리) | 121 | 16,969 | 2,053,249 | 1,225 | 16,969 | 20,787,025 | |
| | 고재 처리 | 93 | -310,390 | -28,866,270 | 102 | -310,390 | -31,659,780 | |
| | 소계 | | | 138,985,060 | | | 94,018,081 | |
| 준공(정산) (2017.9.13) | 건설폐재류 | 15 | 27,069 | 406,035 | 2,646 | 27,074 | 71,637,804 | |
| | 혼합폐기물 | 4,729 | 34,974 | 165,392,046 | 856 | 38,847 | 33,253,032 | |
| | 폐콘(업체처리) | 121 | 16,969 | 2,053,249 | 1,225 | 16,969 | 20,787,025 | |
| | 고재 처리 | 93 | -310,390 | -28,866,270 | 102 | -310,390 | -31,659,780 | |
| 최종 계 | | | 138,985,000 | | | 94,018,000 | △ 45,701,766원(부당증액) △ 44,967,000원(최종누계액) | |

※ 울산광역시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서 기한 내 입력 불이행

한편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 2의 2]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울바로시스템에 1일 또는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하며,

8)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제공 건설폐재류 단가(2015년) × 낙찰율(87.745%) 적용

9)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제공 건설폐재류 단가(2015년) × 낙찰율(87.745%) 적용

10) 설계 기준상 혼합폐기물 물량이나 성상 구분시 폐콘(업체처리)으로 분류

11) 설계 기준상 건설폐재류 물량이나 성상 구분시 고재처리로 분류 - 붙임 2 : 건설표준품셈 1-38 환경관리비

12) 설계 기준상 폐콘(업체처리) 물량이나 성상 구분시 혼합폐기물로 분류

같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상기와 같이 ‘통합 ○○○ 센터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사업기간동안 실제 운반·처리한 건설폐기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있다가 [표2]와 같이 1일에서 부터 6일까지 지연하여 입력하는 등 발생된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을 인계·인수 시 마다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 입력한 사실이 있다.

[표2] 올바로 시스템 지연입력 현황

| 구 분 | 지연 입력현황 | | | 건수 | 성 상 | 비 고 |
|--|------------|------------|-----|----|------------|------|
| | 인계·인수일 | 등록일(작업일) | 지연일 | | | |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¹³⁾ | 2015. 4.10 | 2015. 4.13 | 1일 | 2 | 혼 합 폐기물 | 2일이내 |
| | 2016.12.30 | 2017. 1. 2 | 1일 | 2 | | |
| | 2017. 1.20 | 2017. 1.23 | 1일 | 1 | | |
| | 2017. 2.22 | 2017. 2.27 | 3일 | 1 | | |
| | 2017. 4.20 | 2017. 4.24 | 2일 | 2 | | |
| | 2017. 5.13 | 2017. 5.16 | 1일 | 1 | | |
| | 2017. 5.30 | 2017. 6. 7 | 6일 | 1 | | |
| | 2017. 6.16 | 2017. 6.20 | 2일 | 1 | | |
| | 2017. 6.22 | 2017. 6.28 | 4일 | 1 | | |
| | 2017. 6.30 | 2017. 7. 5 | 3일 | 1 | | |
| | 2017. 8. 4 | 2017. 8. 8 | 2일 | 2 | | |
| | 2017. 8.22 | 2017. 8.25 | 1일 | 1 | | |
| | 2017. 9. 2 | 2017. 9. 6 | 2일 | 3 | | |
| 소 계 | | | | 19 | | |
| 운반자 | 2015. 5.26 | 2015. 5.29 | 1일 | 11 | 시 잔토처리장 | 2일이내 |
| | 2015. 5.29 | 2015. 6. 1 | 1일 | 2 | | |
| | 2015. 6. 5 | 2015. 6. 9 | 2일 | 3 | | |
| | 2015. 6.19 | 2015. 6.22 | 1일 | 2 | | |
| | 2015. 7.17 | 2015. 7.20 | 1일 | 10 | | |
| | 2017. 4.20 | 2017. 4.24 | 2일 | 14 | | |
| 소 계 | | | | 42 | | |
| 합 계 | | | | 61 | | |

13) 올바로시스템상 배출자 확정 등록이 자동 설정되어 처리자가 인수 작업을 늦게 처리할 시 배출자의 확정등록일 자 또한 지연 처리됨

※ 울산광역시 ○○○본부 올바로 시스템 입력자료

2. ○○~○○ 1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정산업무 소홀

가. 혼합건설폐기물 정산 미조치

울산광역시(○○○○본부) 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 ~ ○○ 1 도로개설공사¹⁴⁾」 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설도로 구간 내 기존 지장물(건축물 등)의 철거에 따라 2013. 3. 22. (주)○○(대표 ○○○)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¹⁵⁾ 하였으며, 2013. 1. 10. (주)○○○○○○(대표 ○○○)와 2개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¹⁶⁾하여 도로건설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 9. 21. ~ 10. 2.까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¹⁷⁾으로부터 “공공 건설폐기물처리의 특정감사” 결과 동 사업에 혼합건설폐기물(2,834ton) 중에서 임의 산정된 가연성 소각폐기물(142ton)에 대한 감액(설계변경) 조치 및 실제 처리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사요구를 통보받아 이에 대한 수사 결과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 계상된 혼합건설폐기물(2,834ton) 중에서 5%가 가연성 소각폐기물로 산정됨에 따라 혼합건설폐기물의 5%에 해당하는 물량(142ton)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6,469천원)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았다.

14) (공사기간) 2013. 1. 10. ~ 2019. 12. 31. / (계약금액) 111,757,000천원

15) (폐기물처리 용역기간) 2013. 3. 25. ~ 2018. 12. 31. / (계약금액) 1,932,600천원

16)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2013. 1. 10. ~ 2019. 12. 31. / (계약금액) 4,159,535천원

17) 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나. 폐기물 성상구분 부적정

위 관서(○○○○본부)에서는 2015. 5월 울산광역시 ○구 ○○동일원에 추가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상기 지침에 따라 가연성(540ton), 불연성(300ton)으로 성상을 분류하였고, 가연성은 소각물로, 불연성은 매립물로 처리대가를 반영하여 2015. 8. 6. ○○(주)(대표 ○○○) 외 2개사와 계약 체결¹⁸⁾하였으며 2018. 12. 31. 준공 예정에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지침¹⁹⁾」 [별표1] 원단위 참고자료 ‘가. 건물구조별 해체·철거공사 원단위’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콘크리트, 금속, 목재,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폐기물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기 지침 II.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에 따르면 불연성의 종류는 건설폐재류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불연성폐기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활용 등이 가능한 건설폐재류로 분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 매립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불연성폐기물 300ton 전체 물량을 매립물로 반영함에 따라 산정기준²⁰⁾을 감안할 때 [표3]과 같이 270ton에 대해서는 건설폐재류로

18) (폐기물처리 용역기간) 2015. 3. 17. ~ 2017. 9. 13. / (준공금액) 228,899천원

19) 환경부 예규 제629호(2018. 1. 16.)

20)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물구조별 원단위 산정기준에 의함

1. 불연성폐기물 발생비율 : 건축물 연면적의 0.92% 발생

2. 불연성폐기물 : 14,607m²(건축물 연면적)×1.2291~2.1759 [주거용(목조, 연화조적, 슬라브조적, RC조) 원단위 평균] ×0.0093(불연성폐기물 원단위 발생비율)≒300ton

3. 매립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의 10% 반영

4. 매립폐기물 : 300ton×0.1≒30ton

처리가 가능함에도 설계변경 등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 8,915천원(처리비, 운반비 등 포함) 상당의 금액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표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및 처리현황

(단위 : 물량 톤, 금액 천원)

| 구분 | 용역명 | 계약업체 | 성상별 | 도급내역 | | 변경시 | | 증감 | | 비고 |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합계 | - | - | - | 85,614 | 2,075,490 | 85,472 | 2,060,106 | 감 142 | 감 15,384 | |
| 1 | ○○~○○○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주)○○ 대표 | 소 계 | 84,774 | 1,932,600 | 84,902 | 1,935,229 | 증 128 | 증 2,629 | |
| | | | 폐콘크리트 | 33,399 | 391,906 | 33,399 | 391,906 | - | - | |
| | | | 페아스콘 | 9,452 | 82,386 | 9,452 | 82,386 | - | - | |
| | | | 건설폐재류 | 39,692 | 1,337,244 | 39,962 | 1,346,342 | 증 270 | 증 9,098 | |
| | | | 혼합폐기물 | 2,089 | 95,159 | 1,947 | 88,690 | 감 142 | 감 6,469 | |
| | | | 소각류 | 142 | 25,905 | 142 | 25,905 | - | - | |
| 2 | ○○~○○○ 도로개설공사 폐기물(가연성·불연성) 처리용역 | (주)○○ 외 2개사 대표 | 소 계 | 840 | 142,890 | 570 | 124,877 | 감 270 | 감 18,013 | |
| | | | 소각류 | 540 | 122,875 | 540 | 122,875 | - | - | |
| | | | 매립류 | 300 | 20,015 | 30 | 2,002 | 감 270 | 감 18,013 | |

※ 울산광역시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통합 ○○○센터 구축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설계용역의 과업책임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

②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한 내 입력하지 아니한 ○○○○○(주)(대표 ○○○)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법」 등에 따라 적의 조

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 0 도로개설공사의 혼합건설폐기물 물량 정산 및 불연성폐기물의 과다 계상에 따른 차액 공사비 15,384천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설계변경(감액)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물량 및 비용을 산출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정상 및 물량 등이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